

의안번호	제 725 호
의결연월일	2025. 12. 2. (제310회 제2차 정례회)

**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
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**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72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14.

제출자 : 서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서산시는 '25년 2월 「지속가능항공유(SAF)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」 통합 실증설비 구축 지자체 선정 공고에 1순위 지자체로 선정됨.

< 사업개요 >

- 사업명: 지속가능항공유(SAF) 전주기 통합 생산기술개발
- 사업기간: 2026~2031년
- 총사업비: 3,110억 원
- 사업내용: 실증시설 구축, 설비운영 및 실증연구
- 주 관: 산업통상부^(주관) /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^(기획수행기관)

- 산업통상부에서는 예타 기획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사업과 비예타사업으로 나누어 진행중이며,
 - (예 타) 중장기수요 대응을 위해 2,625억 원 규모의 연구기획 추진중
 - (비예타) 단기수요 대응을 위해 R&D사업 485억 편성 추진('26년~'29년)
- ※ 2026년도 R&D사업 국비예산 50억원 확정, 3개 연구기관 선정
-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급 연구기획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, 시·도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기획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출연하고자함.

2. 출연근거

- 「에너지법」 제13조
- 「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6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3. 주요내용

- 출연시기: 2026. 1월 중
- 출연기관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- 출연금액: 금50,000,000원(금오천만원)
 - 총사업비: 1.55억 원(국 0.55, 도 0.5, 시 0.5)
- 출연내용: 지속가능항공유(SAF) 증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
 - 기술개발사업의 목표,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마련
 - HEFA를 대체할 미래 신기술 기획과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
 - 연구개발성과의 활용·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및 기대효과 도출
 -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획보고서 작성
- 과제기간: 2026. 1. ~ 2026. 11.(11개월)

4. 그동안 추진사항

- 2025. 2.: 지속가능항공유 실증설비 구축 공모, 1순위 지자체로 선정
- 2025. 4.: 산업통상자원부(석유산업과) 방문 및 업무협약
- 2025. 9.: 고등기술연구원 방문 및 업무협약(道, 市)
- 2025. 9.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업무협약(道, 市)
- 2025. 11.: 산업기술R&D 연구기획사업 컨소시엄* 구성
 - *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충청남도, 서산시, 대학, 컨설팅업체
- 2025. 11.: 11월 의원정책간담회 안건 설명

5. 향후 추진계획

- 2025. 12.: 2026년 본예산 시의회 의결 및 확정
- 2025. 12.: 산업기술R&D 연구기획사업 컨소시엄 협약 체결
- 2026. 1.: 출연금 지급(→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)
- 2026. 1. ~ : 연구과제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

6. 참고사항

- (참고 1) 관련 법률 및 조례 1부.

참고1

관련 법률 및 조례

■ 에너지법

제13조(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)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, 평가 및 관리
2.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
3.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
4.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.

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*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*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■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■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제6조(지역산업 육성사업)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
-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 3. 정부나 충청남도 또는 시가 출자·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보조·출연·용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